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1가단52262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박헌홍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경

변 론 종 결 2024. 3. 19.

판 결 선 고 2024. 4. 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접수 제982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83호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3.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집행문부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09831)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1. 4. 28.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등은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문부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4. 2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2021. 5. 13.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

다. 피고는 2021. 5. 25.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및 이 사건 집행문부여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집행문부여 판결에 관하여 2022. 7. 28.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8785), 위 항소에 관하여 2023. 8. 17.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3억 원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3억 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집행문부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관한 집행문이 부여됨으로써 그에 따라 마쳐진 것이고, 이 사건 집행문부여 판결은 그에 대해 제기한 원고의 추완항소가 각하되어 확정됨으로써 그 항소기간 만료 시인 2021. 5. 13.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확정된 이 사건 집행문부여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별지